

의안번호	2215322
의 퇴 인	이훈기의원
회 답 일	2026. 4. 17.
추계번호	25B7062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지된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,700만원(연평균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금지된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(안 제33조제1항·제2항)	3	6	6	6	6	27	5
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수립 (안 제33조제3항)	50	—	—	—	—	50	10
합 계	53	6	6	6	6	77	15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,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(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의 확인)	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<u>금지된 인공지능</u>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<u>금지된 인공지능</u>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·재량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음(제2항)	의무·재량 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 및 금지된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3조(고영 향 인공지능 또	금지된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(제 1항·제2항)	○	•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2	는 금지된 인공 지능의 확인)	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수립 (제3항)	○	•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다만, ‘금지된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’는 위원회 구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금지된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(안 제33조제1항·제2항)

-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금지된 인공지능¹⁾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(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)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유사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‘고성능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 중에 있음

[표 2] (유사사례) 고성능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구성 및 운영 현황
위원회 구성	○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 pool 구성(총 60명) - 민간위원 수: 총 7명(4개 분야) ○ 확인 요청 시 관련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(5명 이내)하여 심사
회의 운영 사례	○ 연간 요청건수: 약 30건으로 추정 - 2026년 3월 기준 총 3건의 확인 요청에 따른 소위 구성(총 3회) - 소위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인원 : 회의별 평균 1명의 민간위원 참석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의2. “금지된 인공지능”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·이용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.

- 가.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심리·사고·행동을 현저하게 왜곡하거나, 직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·예측하여 특정인의 평가·채용·징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. 다만, 의료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개발·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나. 도로, 광장, 공원, 공연장, 전시장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·처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
- 다. 생체인식정보를 기반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를 추론하여 사람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시스템
- 라.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인공지능시스템
- 마.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·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신뢰도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특정인의 권리·의무 또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
- 바.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를 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
- 사.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 또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시스템.
- 아.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

- (금지된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 구성) 금지된 인공지능 확인 요청 시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(민간위원 1명)
 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위원회는 위원 5명(민간위원 1명, 공무원위원 4명)으로 구성
 - 위원 pool은 기 구성된 고성능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의 위원 pool을 공유하거나 관련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정
- (금지된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건수 및 회의 개최 횟수) 유사사례를 참고하여,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연간 30회로 가정
 - 다만, 2026년은 회의 개최 횟수를 15회로 가정
- (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)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⁾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지된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,700만원(연평균 54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금지된 인공지능 확인 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참석 민간위원 수(A, 명)	1	1	1	1	1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15	30	30	30	30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20	20	20	20	2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3	6	6	6	6	27	5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□ 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수립(안 제33조제3항)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지된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(가이드라인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)을 참조하여 추계함
 - 연구용역은 202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유사사례의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실시 기관	연구용역명	실시년도	예산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정보통신산업진흥원)	공공기관 AI 전환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	2026	50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한국인터넷진흥원)	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	2024	5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내용 참조

-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금지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수립	50	-	-	-	-	50	1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,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